

#### 2)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개편 ('16.3.1.시행)

문화예술교육사의 질 높은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을 위해 1급 교육과정은 기획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과목으로 2급 교육과정은 현장의 이해와 문화예술교육 철학 및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개편 하였습니다.



#### 총 5과목(150시간) 이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 중 교육과정 이수요건에 관한 1급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직무역량	1)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	
	2)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파트너십	90시간 (3과목)
	3) 문화예술교육 관리 실무	
예술교육 전문성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ㅣ,॥	60시간 (2과목)

## 2급 교육과정

#### 총 15과목(40학점) 이수

#### 문화예술 관련 분야 전공자의 경우, 5과목(10학점) 이수

2급 교육과정을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나 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또는 학점
직무역량	1) 문화예술교육 개론	30시간 (2학점)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 (3과목)*	90시간 (6학점)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30시간 (2학점)
예술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 (10과목 이상)	450시간 (30학점)

<sup>※</sup> 세부 교과목은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http://acei,arte,or,kr)를 통해 확인 가능

#### 3)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개설 시, 교과목 적합여부 확인 요청 의무화(16,3,1,시행)

- 대학 등의 각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확인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 이는 국가공인 자격제도의 질적 관리를 위한 장치로써, 교육기관이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현황

1 급 교육과정 교육기관

대상: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기관: 2016년 과정운영 (예정)

2급 교육과정 교육기관

대상: 문화예술 관련 졸업자, 고졸자 및 비전공자

연번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1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서울	02) 820-6726
2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서울	02) 3277-3112
3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인천	032) 860–8006
4	계명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대구	053) 620–2188
5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부산	051) 510–3350
6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경북 칠곡	054) 970–3105
7	한서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충남 서산	041) 660-1403
8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충남 금산	041) 750-6581
9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전북 전주	063) 253-7072
10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광주	062) 380–8503
11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광주	062) 530–3005
12	전북문화예술교육원 (백제예술대학교 · (사)전통문화미을)	전북 완주	063) 232–1905

<sup>※</sup>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은 지정 기간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 안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상담

• 상담시간: 평일 월~금 /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홈페이지 상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http://acei.arte.or.kr)









#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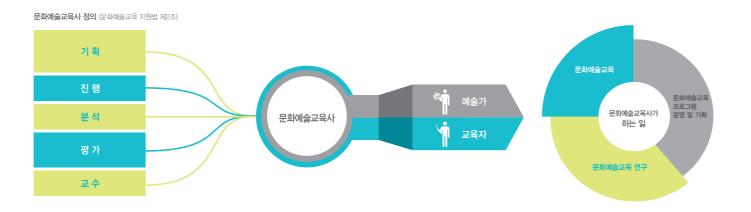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이 교수활동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게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필요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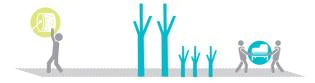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사의 길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개선

약 2년 간의 제도개선 심층연구, 분아별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개정안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편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의 전공학력을 인정해 예술 전문성 교과목 추가 이수 비용 부담 절감과 진입장벽을 완화하였으며 직무 차별성과 자격제도의 질적 수준, 취득희망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개선 세부사항

####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요건 개정

#### 원격대학 · 학점은행제 예술분야 학위취득자의 전공학력 인정 ('16.3.1.시행)

- 문화예술교육사 취득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학력요건을 확대하여 개정 전에는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등에서 예술 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경우에만 전공학력 인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까지 전공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 학교·사회 문화예술 참여경력에 따른 자격부여 기한 설정 (16.3.31.까지)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예술강사 경력자의 자격 부여에 대하여는
조항의 경과규정적 성격을 고려, 2016년 3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설정 하였습니다.







#### 1 급 자격요건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요건
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교육과정 이수 * <b>5과목 이상 150시간</b>

#### 2급 자격요건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요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 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 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 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 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교육과정 이수 (예술전문성 교과영역 제외) *5과목 150시간 또는 10학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급 교육과정 이수 *15 <b>과목 600시간 또는 40학점</b>	
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 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 상인 시람(학교 예술강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16.	3.31 <i>.까</i>
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시람(사회 예술강사)		사목으로 취득 가능
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 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이수	

